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0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조경태·김성원·김상훈

백종헌 · 강선영 · 김대식

정연욱 • 김미애 • 조지연

박준태 • 곽규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영산강, 낙동강 등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류 이후 5대 강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그러나장마기간 중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쓰레기로 인해 가용장비와 인력의 부족을 매년 겪고 있음.

또한, 내륙지역에서 발생해 떠밀려온 해안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예산상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 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조치) ①・② (생 략)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등이 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